

□ 지방세법 시행령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06조(납세의무자의 범위 등) ① 삭 제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06조(납세의무자의 범위 등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</u> <u>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이</u> <u>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.</u></p> <p>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, 같은 호 나 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 합</p> <p>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」 제23조에 따른 조합</p> <p>3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7조에 따 른 마을정비조합</p> <p>4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 6호에 따른 조합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